

제2672호
2019. 7. 31.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고 시

제2019-92호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2
제2019-93호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 고시	3
제2019-94호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안)	13

● 공 고

제2019-571호 :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	14
제2019-574호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
 릿>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고 시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92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지번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8길 3-6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81-1	2019.07.31.	건물군 생성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43)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도로명주소가 새로이 부여됩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93호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승인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세출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결산개요

- ▶ 예산현액 533,090,606,450원(전년도이월금 49,278,487,450원 포함)에 대하여
수납액은 548,409,185,172원이고
지출액은 392,768,667,537원이며
- ▶ 그 결산상 잉여금은 155,640,517,635원으로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이 없으므로
결산상 잉여금 155,640,517,635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 ▶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 명시이월 11,359,701,180원
 - 사고이월 26,940,207,000원
 - 계속비이월 0원
 - 보조금 반납금 5,743,498,84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597,110,614원이다.

2.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

가. 2018회계연도 결산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A)	세 입 결산액 (B)	세 출 결산액 (C)	결산상 잉여금 (다음도이월) (D=B-C)	다음연도 이월내역			
					명 시 이월액 (E)	사 고 이월액 (F)	보 조 금 반 납금 (G)	순 세 계 잉 여 금 (H)=D-E-F- G
총계	533,090,606,450	548,409,185,172	392,768,667,537	155,640,517,635	11,359,701,180	26,940,207,000	5,743,498,841	111,597,110,614
일반 회계	458,147,805,530	475,183,362,120	371,433,156,926	103,750,205,194	11,359,701,180	23,120,127,040	5,265,584,451	64,004,792,523

특별 회계		74,942,800,920	73,225,823,052	21,335,510,611	51,890,312,441		3,820,079,960	477,914,390	47,529,318,091
의료 급여 기금		296,062,000	400,411,070	283,001,030	117,410,040			12,460,730	104,949,310
주민 소득		1,916,840,000	1,878,505,945		1,878,505,945				1,878,505,945
주차 장		71,721,792,920	69,838,224,944	21,052,509,581	48,785,715,363		3,820,079,960	465,453,660	44,500,181,743
기타 시설		1,008,106,000	1,108,681,093		1,108,681,093				1,108,681,093

나. 일반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417,631,389,000	458,147,805,530	520,052,012,800	475,183,362,120	43,685,562,910
지방세수입	128,985,530,000	128,985,530,000	139,331,160,110	135,874,073,530	3,213,521,250
지방세	128,985,530,000	128,985,530,000	139,331,160,110	135,874,073,530	3,213,521,250
세외수입	71,974,184,000	71,974,184,000	121,905,246,560	80,493,682,460	40,472,041,660
경상적세외수입	55,271,916,000	55,271,916,000	59,227,794,020	59,024,720,940	203,073,080
임시적세외수입	16,702,268,000	16,702,268,000	62,677,452,540	21,468,961,520	40,268,968,580
지방교부세	5,898,043,000	5,898,043,000	7,087,287,010	7,087,287,010	
지방교부세	5,898,043,000	5,898,043,000	7,087,287,010	7,087,287,010	
조정교부금등	32,055,237,000	32,055,237,000	34,972,285,150	34,972,285,150	
자치구조정교부금등	32,055,237,000	32,055,237,000	34,972,285,150	34,972,285,150	
보조금	123,849,622,000	123,849,622,000	120,993,256,820	120,993,256,820	
국고보조금등	66,071,665,000	66,071,665,000	64,010,225,090	64,010,225,090	
시·도비보조금등	57,777,957,000	57,777,957,000	56,983,031,730	56,983,031,73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4,868,773,000	95,385,189,530	95,762,777,150	95,762,777,150	
보전수입등	54,868,773,000	95,385,189,530	95,762,777,150	95,762,777,150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417,631,389,000	458,147,805,530	371,433,156,926	34,479,828,220	5,265,584,051	46,969,236,333
일반공공행정	26,689,440,000	28,777,347,220	24,095,835,449	1,710,859,790	30,344,318	2,940,307,663
입법및선거관리	2,621,290,000	2,621,290,000	2,099,318,325			521,971,675
지방행정·재정지원	932,256,000	932,256,000	771,270,650		11,737,900	149,247,450
일반행정	23,135,894,000	25,223,801,220	21,225,246,474	1,710,859,790	18,606,418	2,269,088,538
공공질서및안전	4,224,086,000	4,849,226,490	3,889,935,730	784,477,670	6,443,484	168,369,606
재난방재·민방위	4,224,086,000	4,849,226,490	3,889,935,730	784,477,670	6,443,484	168,369,606
교육	8,932,267,000	8,932,267,000	7,982,888,224	421,831,800	135,000,408	392,546,568
유아및초중등교육	6,518,780,000	6,518,780,000	5,741,652,650	421,831,800	67,547,550	287,748,000
평생·직업교육	2,413,487,000	2,413,487,000	2,241,235,574		67,452,858	104,798,568
문화및관광	18,764,349,000	21,969,524,740	17,709,861,763	2,894,636,800	574,427,760	790,598,417
문화예술	5,591,241,000	5,611,021,000	5,208,030,312	28,418,000	225,000,000	149,572,688
관광	1,692,150,000	2,192,150,000	592,388,900	1,536,967,800	12,967,340	49,825,960
체육	10,818,778,000	11,186,851,000	10,604,340,841		7,009,620	575,500,539
문화재	662,180,000	2,979,502,740	1,305,101,710	1,329,251,000	329,450,800	15,699,230
환경보호	28,687,947,000	29,289,835,500	26,983,807,875	943,704,230	58,518,050	1,303,805,345
상하수도·수질	2,378,314,000	2,808,311,000	2,600,243,735		20,787,900	187,279,365
폐기물	25,959,489,000	26,131,380,500	24,175,144,040	839,610,090	37,230,150	1,079,396,220
대기	243,671,000	243,671,000	108,007,110	104,094,140		31,569,750
환경보호일반	106,473,000	106,473,000	100,412,990		500,000	5,560,010
사회복지	127,993,792,000	132,169,883,080	119,207,521,442	1,670,963,900	3,084,015,189	8,207,382,549
기초생활보장	19,176,179,000	19,176,179,000	18,391,408,300		635,490,710	149,279,990
취약계층지원	16,914,143,000	17,114,509,000	16,356,603,775		161,064,988	596,840,237
보육·가족 및 여성	40,718,616,000	40,932,085,820	36,806,623,650	1,543,000,000	726,223,940	1,856,238,230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노인·청소년	45,484,941,000	49,232,196,260	42,511,513,809	118,173,900	1,510,028,281	5,092,480,270
노동	4,209,331,000	4,224,331,000	3,714,981,460		51,207,270	458,142,270
보훈	1,002,142,000	1,002,142,000	972,709,668			29,432,332
사회복지일반	488,440,000	488,440,000	453,680,780	9,790,000		24,969,220
보건	10,015,386,000	10,136,941,440	7,931,107,480	1,063,105,000	530,055,114	612,673,846
보건의료	9,653,366,000	9,774,921,440	7,574,370,500	1,063,105,000	530,055,114	607,390,826
식품의약품안전	362,020,000	362,020,000	356,736,980			5,283,020
농림해양수산	541,663,000	740,651,000	599,123,070		6,602,490	134,925,440
농업·농촌	434,763,000	434,763,000	297,111,910		6,559,010	131,092,080
임업·산촌	106,900,000	305,888,000	302,011,160		43,480	3,833,360
산업·중소기업	4,396,804,000	7,345,294,200	4,763,071,289	1,912,443,430	147,129,036	522,650,445
산업진흥·고도화	4,297,684,000	7,246,174,200	4,674,265,579	1,912,443,430	139,559,336	519,905,855
에너지및자원개발	99,120,000	99,120,000	88,805,710		7,569,700	2,744,590
수송및교통	15,412,883,000	22,074,654,140	13,587,070,685	7,144,816,400	594,735	1,342,172,320
도로	14,357,450,000	21,019,221,140	13,086,233,785	6,674,816,400	560,175	1,257,610,780
대중교통·물류등기 타	1,055,433,000	1,055,433,000	500,836,900	470,000,000	34,560	84,561,540
국토및지역개발	37,194,036,000	57,341,996,720	38,030,799,380	15,932,989,200	560,048,477	2,818,159,663
지역및도시	37,194,036,000	57,341,996,720	38,030,799,380	15,932,989,200	560,048,477	2,818,159,663
예비비	20,383,582,000	20,125,030,000				20,125,030,000
예비비	20,383,582,000	20,125,030,000				20,125,030,000
기타	114,395,154,000	114,395,154,000	106,652,134,539		132,404,990	7,610,614,471
기타	114,395,154,000	114,395,154,000	106,652,134,539		132,404,990	7,610,614,471

다. 특별회계 결산

(1) 세 입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합 계	66,180,730,000	74,942,800,920	116,388,761,629	73,225,823,052	42,313,193,777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6,062,000	296,062,000	853,546,310	400,411,070	418,595,540
세외수입			558,084,550	104,949,310	418,595,540
경상적세외수입			1,894,200	1,894,200	
임시적세외수입			556,190,350	103,055,110	418,595,540
보조금	227,480,000	227,480,000	226,880,000	226,880,000	
국고보조금등	113,740,000	113,740,000	113,440,000	113,440,000	
시·도비보조금등	113,740,000	113,740,000	113,440,000	113,440,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582,000	68,582,000	68,581,760	68,581,760	
보전수입등	68,582,000	68,582,000	68,581,760	68,581,7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916,840,000	1,916,840,000	2,012,785,882	1,878,505,945	134,279,937
세외수입	33,130,000	33,130,000	170,075,544	35,795,607	134,279,937
경상적세외수입	33,130,000	33,130,000	35,795,607	35,795,607	
임시적세외수입			134,279,937		134,279,93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883,710,000	1,883,710,000	1,842,710,338	1,842,710,338	
보전수입등	1,883,710,000	1,883,710,000	1,842,710,338	1,842,710,338	
주차장특별회계	62,959,722,000	71,721,792,920	112,413,748,344	69,838,224,944	41,760,318,300
세외수입	17,866,312,000	17,866,312,000	58,578,267,480	16,002,744,080	41,760,318,300
경상적세외수입	8,570,116,000	8,570,116,000	7,145,313,630	7,145,313,630	
임시적세외수입	9,296,196,000	9,296,196,000	51,432,953,850	8,857,430,450	41,760,318,300
보조금	131,862,000	131,862,000	111,862,000	111,862,000	
국고보조금등	20,880,000	20,880,000	20,880,000	20,880,000	
시·도비보조금등	110,982,000	110,982,000	90,982,000	90,982,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4,961,548,000	53,723,618,920	53,723,618,864	53,723,618,864	
보전수입등	44,961,548,000	53,723,618,920	53,723,618,864	53,723,618,864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기반시설특별회계	1,008,106,000	1,008,106,000	1,108,681,093	1,108,681,093	
세외수입	16,000,000	16,000,000	116,575,260	116,575,260	
경상적세외수입	16,000,000	16,000,000	18,433,050	18,433,050	
임시적세외수입			98,142,210	98,142,21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92,106,000	992,106,000	992,105,833	992,105,833	
보전수입등	992,106,000	992,106,000	992,105,833	992,105,833	

(2) 세 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합 계	66,180,730,000	74,942,800,920	21,335,510,611	3,820,079,960	477,914,390	49,309,295,95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96,062,000	296,062,000	283,001,030		12,460,730	600,240
사회복지	261,862,000	261,862,000	250,673,300		11,188,460	240
기초생활보장	261,862,000	261,862,000	250,673,300		11,188,460	240
기타	34,200,000	34,200,000	32,327,730		1,272,270	600,000
기타	34,200,000	34,200,000	32,327,730		1,272,270	600,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자금특별회계	1,916,840,000	1,916,840,000				1,916,840,000
사회복지	1,916,840,000	1,916,840,000				1,916,840,000
기초생활보장	1,916,840,000	1,916,840,000				1,916,840,000
주차장특별회계	62,959,722,000	71,721,792,920	21,052,509,581	3,820,079,960	465,453,660	46,383,749,719
수송및교통	58,800,241,000	67,562,311,920	17,399,309,741	3,820,079,960	465,453,660	45,877,468,559
대중교통·물류등기타	58,800,241,000	67,562,311,920	17,399,309,741	3,820,079,960	465,453,660	45,877,468,559
기타	4,159,481,000	4,159,481,000	3,653,199,840			506,281,160
기타	4,159,481,000	4,159,481,000	3,653,199,840			506,281,160
기반시설특별회계	1,008,106,000	1,008,106,000				1,008,106,000
국토및지역개발	1,008,106,000	1,008,106,000				1,008,106,000
지역및도시	1,008,106,000	1,008,106,000				1,008,106,000

3. 주민 부담 지방세액

지 방 세 실 수 납 액	인 구	주민 1인당 부담 지방세액
135,874,073,530원	125,725명	1,080,724원

4. 지방채 등 채무관리 현황

- 가. 채 무 현 황 : 우리구 채무 없음
 나. 채무부담행위 : 우리구 채무부담행위 없음
 다. 채 권 현 황 : 융자금 등 23,731,725,389원

5. 기금운용 상황

(단위 : 원)

기 금 명	2017년말 조 성 액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말 조 성 액
		조 성 액	사 용 액	
계	21,844,958,366	9,542,225,135	10,403,314,490	20,983,869,011
중소기업육성기금	5,191,556,250	6,132,263,799	7,421,017,500	3,902,802,549
재난관리기금	4,877,373,202	1,344,019,070	1,354,411,690	4,866,980,582
도로굴착복구기금	2,151,177,923	914,463,200	957,983,950	2,107,657,173
노인복지기금	2,042,603,096	37,501,550	72,830,000	2,007,274,646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 지매입기금	2,013,021,391	38,566,794	0	2,051,588,185
식품진흥기금	2,008,803,751	328,950,446	173,670,070	2,164,084,127
양성평등기금	1,345,430,672	24,965,380	22,570,080	1,347,825,972
자활기금	870,059,012	30,816,759	2,855,720	898,020,051
옥외광고정비기금	785,532,314	469,065,530	275,000,000	979,597,844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	382,117,930	105,208,640	43,085,380	444,241,190
체육진흥기금	177,282,825	116,403,967	79,890,100	213,796,692

6.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1,985,998,281,929	5,702,893,990	1,587,948,500	1,990,113,227,419
행정 재산	계	1,976,599,503,675	5,702,893,990	1,567,048,500	1,980,735,349,165
	공 공 용 재 산	1,716,792,661,547	2,043,355,730	1,333,300,000	1,717,502,717,277
	공 용 재 산	259,806,842,128	3,659,538,260	233,748,500	263,232,631,888
	기 업 용 재 산				
	보 존 재 산				
일 반 재 산		9,398,778,254		20,900,000	9,377,878,254

7. 주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수량/개, 금액/원)

구분	전년도말 보유현황	당 해 연 도 증 감					당해연도말 보유현황
		취 득		처 분			
		소 계	구 매	소 계	매 각	기타	
수량	1,040	167	167	70	68	2	1,137
금액	8,296,696,031	1,527,892,045	1,527,892,045	326,275,998	322,362,998	3,913,000	9,498,312,078

8. 재무제표

(1)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8년	2,362,499,441,688	27,133,424,139	2,335,366,017,549	380,787,595,976	339,900,785,395	-40,886,810,581
2017년	2,319,772,103,851	26,657,932,228	2,293,114,171,623	361,566,551,742	335,216,517,931	-26,350,033,811
증 감	42,727,337,837	475,491,911	42,251,845,926	19,221,044,234	4,684,267,464	-14,536,776,770

(2) 재정상태표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7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I. 자산총계	2,362,499,441,688	100.00	2,319,772,103,851	100.00
유동자산	268,773,965,870	11.38	272,704,060,201	11.76
투자자산	20,441,116,505	0.87	20,093,510,394	0.87
일반유형자산	167,460,639,765	7.09	164,430,081,771	7.09
주민편의시설	462,624,278,629	19.58	428,212,565,458	18.46
사회기반시설	1,438,358,763,259	60.88	1,429,298,179,097	61.61
기타비유동자산	4,840,677,660	0.20	5,033,706,930	0.21
II. 부채총계	27,133,424,139	100.00	26,657,932,228	100.00
유동부채	7,678,653,783	28.30	5,279,016,926	19.80
기타비유동부채	19,454,770,356	71.70	21,378,915,302	80.20
III. 순자산총계 (I - II)	2,335,366,017,549		2,293,114,171,623	

(3) 재정운영표

(단위 : 원)

구 분	2018년		2017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I. 비용총계	339,900,785,395	100.00	335,216,517,931	100.00
인건비	114,183,872,365	33.59	114,991,068,461	34.30
운영비	81,153,168,983	23.88	71,129,980,000	21.22
정부간이전비용	8,857,437,219	2.61	8,837,395,720	2.64
민간등이전비용	122,593,083,205	36.07	119,594,546,111	35.68
기타비용	13,113,223,623	3.86	20,663,527,639	6.16
II. 수익총계	380,787,595,976	100.00	361,566,551,742	100.00
자체조달수익	221,753,291,378	58.24	207,739,899,274	57.46
정부간이전수익	158,118,716,139	41.52	152,154,253,397	42.08
기타수익	915,588,459	0.24	1,672,399,071	0.46
III. 운영차액 (I - II)	-40,886,810,581		-26,350,033,811	

9. 성과보고서

(단위 : 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 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증감
		개 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 성			
계	9	61	134	16	65	53	392,768,667,537	357,308,959,246	35,459,708,291
감사담당관	1	1	2	0	1	1	159,953,787	169,801,900	-9,848,113
공보실	1	1	2	0	2	0	837,345,745	810,147,440	27,198,305
행정관리국	1	13	23	4	11	8	127,579,271,205	122,582,738,954	4,996,532,251
기획재정국	1	8	17	2	9	6	11,508,772,760	13,753,262,622	-2,244,489,862
복지환경국	1	14	28	2	9	17	151,358,117,172	139,783,433,280	11,574,683,892
도시관리국	1	9	19	1	13	5	39,150,565,454	27,685,620,085	11,464,945,369
안전건설국	1	8	22	4	11	7	42,959,955,385	33,750,849,147	9,209,106,238
보건소	1	6	19	3	7	9	16,506,642,253	16,188,067,294	318,574,959
구의회	1	1	2	0	2	0	2,708,043,776	2,585,038,524	123,005,252

10.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

(단위 :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자산(C)	부채(D)	부채/ 자산 (D/C)
계=a+b-A	584,116,242,891	426,869,412,716	2,368,308,827,714	29,169,970,245	1.23 %
자치단체(a)	578,560,765,673	422,920,248,038	2,362,499,441,688	27,133,424,139	1.15 %
지방공공기관(b)	28,377,162,354	26,770,849,814	6,569,386,026	2,036,546,106	31.00 %
내부거래(A)	22,821,685,136	22,821,685,136	760,000,000		

※ 자치단체(a)=일반회계+특별회계(4)+기금(11)-회계기금잔전출금
지방공공기관(b)=중구시설관리공단+중구문화재단+인재육성장학재단
내부거래(A)=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간

●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 -94호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고시(안)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을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중구 추가경정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증감률	비 고
계	498,221,805	453,761,983	44,459,822	9.80%	
일 반 회 계	433,379,340	404,042,431	29,336,909	7.26%	
특 별 회 계	64,842,465	49,719,552	15,122,913	30.42%	
의 료 급 여 기 금	290,926	213,200	77,726	36.46%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자 금	2,010,035	2,020,290	△10,255	△0.51%	
주 차 장	61,416,528	46,451,334	14,965,194	32.22%	
기 반 시 설	1,124,976	1,034,728	90,248	8.72%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71호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 재열람공고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포함-

1.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지구(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공고(2018.6.27.~2018.7.27.) 및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9.6.19.)를 통해 정비계획(안)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열람 공고하고 관련도서를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 열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중구청 도심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변경)

1)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순화동 1-24 일대	14,723.1	증) 369.7	15,092.8	서울시 고시 제2003-298호 ('03.10.10)

-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구 순화동 5-1 일대	· 재개발구역 면적 변경 14,723.1㎡→15,092.8㎡(369.7㎡증가)	· 마포로5구역 9-1지구내 동화약품 소유토지 일부 추가편입에 따른 순화구역 면적 증가

2) 지구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순화 도시환경정비구역 제1-2지구	중구 순화동 5-1 일대	1,610.2	1,290.0	320.2	-
변경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중구 순화동 5-1 일대	1,979.9	1,637.2	342.7	-

※ 추가 기반시설 부담(토지환산면적 228.2㎡)은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확정

나. 도시환경정비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1,610.2	증) 369.7	1,979.9	100.0	-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	320.2	증) 22.5	342.7	17.3	-
	공공공지	320.2	증) 14.2	334.4	16.9	-
	도 로	-	증) 8.3	8.3	0.4	-
택 지 (획 지)	소 계	1,290.0	증) 347.2	1,637.2	82.7	-
	대 지	1,290.0	증) 347.2	1,637.2	82.7	-

※ 추가 기반시설 부담(토지환산면적 228.2㎡)은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확정

2)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구 분	면적(㎡)			비율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계	1,610.2	증) 369.7	1,979.9	100.0	-
준주거지역	1,610.2	증) 46.7	1,656.9	83.7	-
일반상업지역	-	증) 323.0	323.0	16.3	-

※ 금회 도시환경정비구역의 지구계 변경 및 편입필지(1-207도)의 면적조정에 따른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사항 없음

나) 용도지구 (해당없음)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	1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6	순화동 1-98	순화동 1-89	-	건설부고시제429호 (1979.1.6.)	-
변경	소로	1	3	10~11	집산 도로	일반 도로	186	순화동 214-2	순화동 1-171	-	건설부고시제429호 (1979.1.6.)	-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3	소로1-3	· 도로 선형 및 폭원변경 - 폭원 : 10m → 10~11m	· 합리적인 도로횡단 구성을 위해 도로선형 일부 변경 · 도로폭원 및 시종점 정정

나)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2	공공공지	순화동1-27번지 일대	926.4 (320.2)	증) 14.2	940.6 (334.4)	서울시고시 제2003-298호 (2003.10.10.)	-

※ ()는 순화 제1-2지구에서 부담하는 면적임

- 공공공지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공지	· 공공공지 편입면적 정정 -320.2㎡ ⇒ 334.4㎡(증)14.2㎡) -926.4㎡ ⇒ 940.6㎡	· 금회 부담하는 잔여공공공지 면적 정정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담)계획

가) 정비기반시설 부담계획

사업 지구	시행지구 면적 (㎡)	대지 면적 (㎡)	정비기반 시설면적 (㎡)	계획기반 시설내 기존공공 용지 (㎡)	대지내 폐지 국공유지 (㎡)	추가부담 건축물 환산부지면적 (㎡)	순부담률(%)			비고
							기반시설 (토지)	추가부담 (㎡,건축물)	합계	
제1-2 지구	1,979.9	1,637.2	342.7	-	58.7	228.2	13.2	10.6	23.8	기결정 부담률 19.9%

※ 추가 기반시설 부담(토지환산면적 228.2㎡)은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하며, 정비기반시설 면적산정에서 제외함
-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대상지 감정평가를 통해 면적 최종확정

※ 순부담률 산출

$$= [(정비기반시설+추가기반시설부담)-기존국공유지] / [시행지구(대지+정비기반시설+추가기반시설부담) - 기존국공유지]$$

$$= [(342.7 + 228.2) - 58.7] / [(1,637.2 + 342.7 + 228.2) - 58.7] = 23.8\%$$

※ 획지내 국공유지 1개필지[순화동1-207도(중구청)]는 무상양도

※ 획지내 국공유지 1개필지[순화동 4-23대(재정경제원 일부 소유)]는 유상매입

나) 정비기반시설 설치(확보)계획

▶ 정비기반시설 부담량 : 570.9㎡ [23.8%, 기결정 부담량 320.2㎡(부담률19.9%)이상 계획]

① 정비기반시설(공공공지, 도로) 부담면적 : 342.7㎡

- 기결정 도시계획시설(북측 공공공지) 일부 부담 : 334.4㎡
- 기결정 도시계획시설(서측 도로) 일부 부담 :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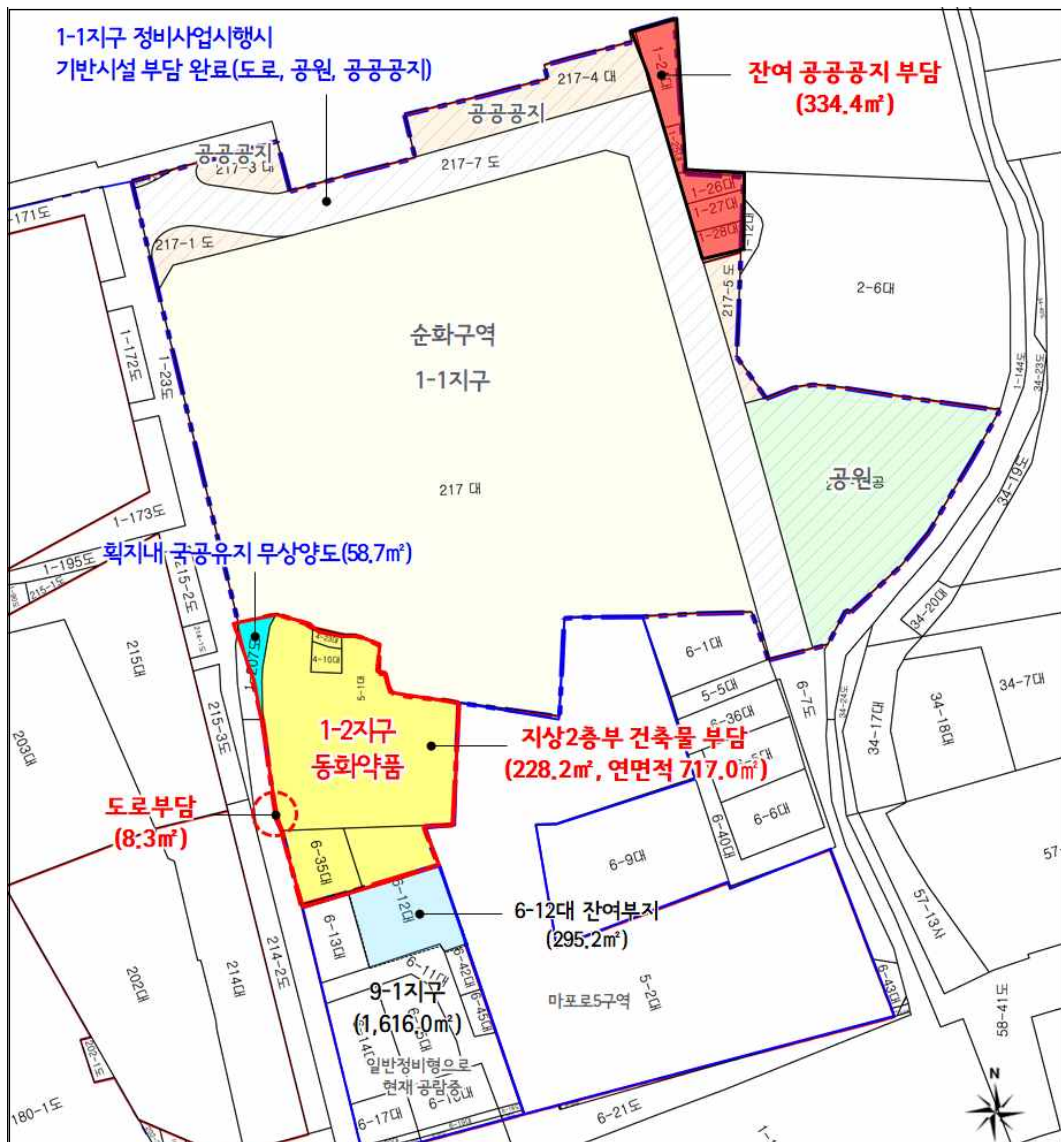
②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면적 : 228.2㎡(실제 토지환산면적 272.8㎡)

- 연면적 환산시 717.0㎡(전용339.6㎡+공용477.4㎡)

③ 획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 58.7㎡

- 획지내 중구청 소관필지 : 1-207번지(도)

구 분		면적(m ²)			비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계		320.2	증) 250.7	570.9	100.0	순부담량 512.2㎡
토지	소 계	320.2	증) 22.5	342.7	60.0	
	공공공지	320.2	증) 14.2	334.4	58.6	-
	도로	-	증) 8.3	8.3	1.4	-
건축물		-	증) 228.2	228.2	40.0	토지환산면적



- 토지(공공공지, 도로)부담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부담면적(㎡)	비고
합 계			342.7	-
공공 공지	소 계		334.4	-
	1	순화동 1-24	공공공지	127.5
	2	순화동 1-25	공공공지	26.9
	3	순화동 1-26	공공공지	58.9
	4	순화동 1-27	공공공지	65.1
	5	순화동 1-28	공공공지	56.0
도로	1	순화동 5-1	도로	8.3

-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

- 추가기반시설 부담은 지상2층부 건축물 기부채납 적용
- 토지환산면적 : 272.8㎡이나, 당초 상정시 용적률 유지(625%)를 위해 228.2㎡로 적용
 - 건축연면적 : 717.0㎡(전용339.6㎡ + 공용377.4㎡)
- 도입시설 : 정동(가칭)역사정보관 조성예정
 - ※ 서울시 주거재생과, 역사도심재생과와 기협의를완료(2019.4)
 - ※ 시설의 지분 및 건축물은 서울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의 운영 및 관리
 -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면적 조정될 수 있으며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세부용도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예정

구 분	산정내용	비 고
도입용도	역사정보관	-
기부채납 연면적	717.0㎡	· 전용면적 339.6㎡ / 공용면적 377.4㎡ · 전용면적은 지상2층에 단일공간으로 구획
건축비	3,258,000원/㎡	·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2017)중 전시/박물관 평균 신축공사비 적용
설치비용	2,335,986,000원	· 설치비용 = 건축비 × 기부채납 연면적
부지가액	11,679,605원/㎡	· 2018년 기준 대지면적 용도지역별 개별공시지가 가중평균값 2배적용
토지환산면적	273.3㎡ 실제 적용면적 228.2㎡	· 당초 상정시 용적률 유지(625%이하)를 위해 228.2㎡적용
환산부지면적	200.0㎡	· 환산부지면적 = 설치비용 / 부지가액
토지지분면적	73.3㎡	· 토지지분면적 = 기부채납면적 / 전체연면적 × 대지면적 73.3㎡ = (717.0㎡ / 16,014.72㎡) × 1,637.2㎡

- 획지내 국공유지 무상양도

구 분	위 치	시설의 종류	부담면적(㎡)	비고
1	순화동 1-207	도로	58.7	중구

5)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지상/지하)	비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기정	순화 도시환경 정비구역 제1-2지구	1,610.2	-	1,290.0	순화동 5-1일대	업무	55이하	445이하	50이하	10/3이하	-																																				
변경	순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1,979.9	-	1,637.2	순화동 5-1일대	업무	60이하	625이하	70이하	15/5이하	-																																				
· 용적률 : 625.0%이하 적용 ① 기준용적률 : 359.2%, 용도지역 가중평균(준주거+일반상업) ② 허용용적률 : 85.4% <table><tr><th>목 적</th><th colspan="2">인센티브 완화 요건</th><th>산정방식</th><th>완화량</th></tr><tr><td rowspan="3">친환경개발</td><td colspan="2">녹색건축물 인증(그린 2등급)</td><td rowspan="3">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1/2부여</td><td rowspan="3">50%</td></tr><tr><td colspan="2">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60(kWh/㎡·y이하)</td></tr><tr><td colspan="2">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0%이상)</td></tr><tr><td>역사보전</td><td colspan="2">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지역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td><td>정률부여</td><td>5.4%</td></tr><tr><td>보행가로 활성화</td><td colspan="2">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td><td>정량부여</td><td>30.0%</td></tr></table> ③ 상한용적률 : 180.8% <table><tr><th>구 분</th><th>인센티브 산식</th><th>적용내용</th><th>완화량</th></tr><tr><td>토지(도로, 공공공지) 및 건축물 부담</td><td>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td><td>444.6%×1.3×0.3128</td><td>180.8%</td></tr><tr><td colspan="2">계</td><td>-</td><td>180.8%</td></tr></table>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2등급)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1/2부여	5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6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0%이상)		역사보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지역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률부여	5.4%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30.0%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토지(도로, 공공공지) 및 건축물 부담	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	444.6%×1.3×0.3128	180.8%	계		-	180.8%
												목 적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친환경개발	녹색건축물 인증(그린 2등급)		기준등급 준수시 허용용적률 총량의1/2부여	50%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260(kWh/㎡·y이하)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10%이상)																																		
												역사보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시설물 포함) 및 지역 유래 등 스토리텔링을 위한 전시공간유치 등 위원회에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률부여	5.4%																															
												보행가로 활성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정량부여	30.0%																															
												구 분	인센티브 산식	적용내용	완화량																																
												토지(도로, 공공공지) 및 건축물 부담	허용용적률×1.3×α (α=부담면적/대지면적)	444.6%×1.3×0.3128	180.8%																																
												계		-	180.8%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한계선 : 서소문로9길변 3m																																															
건축물 용도에 관한 계획																																															
· 지정용도 : 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대지내 공지 : 이면가로변(서소문로9길)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 배치																																															

※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안)

1)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9-1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구명	위 치	시행면적(㎡)	구 분		비 고
				획지(㎡)	정비기반시설(㎡)	
기정	마포로5 도시환경 정비구역 9-1지구	중구 순화동 6-12 일대	2,323.2	1,939.0	384.2	순부담 률 16.5%
변경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9-1지구	중구 순화동 6-12 일대	1,936.3	1,616.0	3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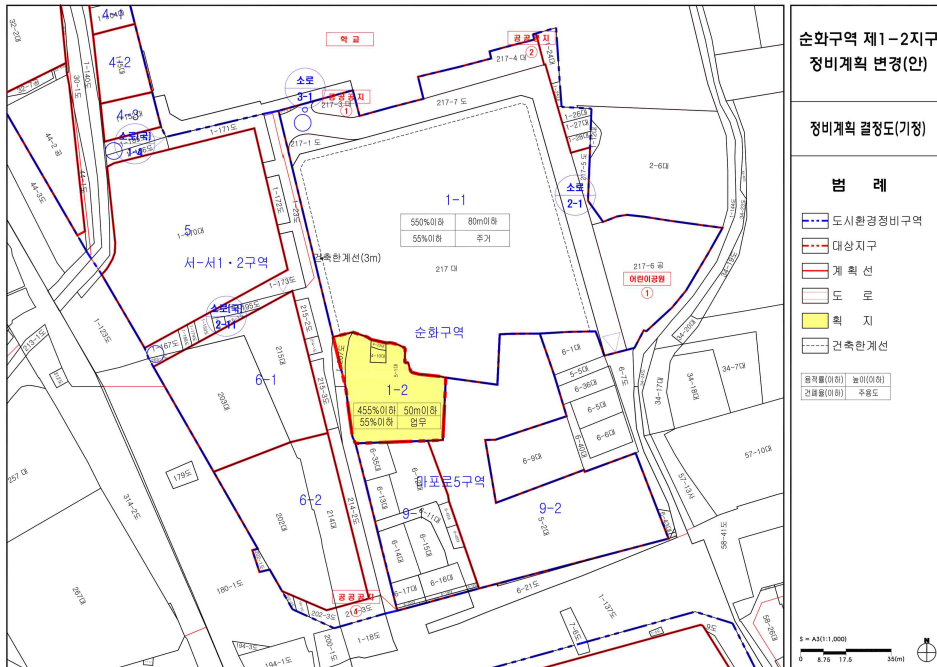
- 정비구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	중구 순화동 6-12 일대	· 지구(획지) 면적 변경 1,939.0㎡→1,616.0㎡(323.0㎡감소)	· 마포로5구역 9-1지구내 동화약품 소유토지 일부 제척에 따른 지구경계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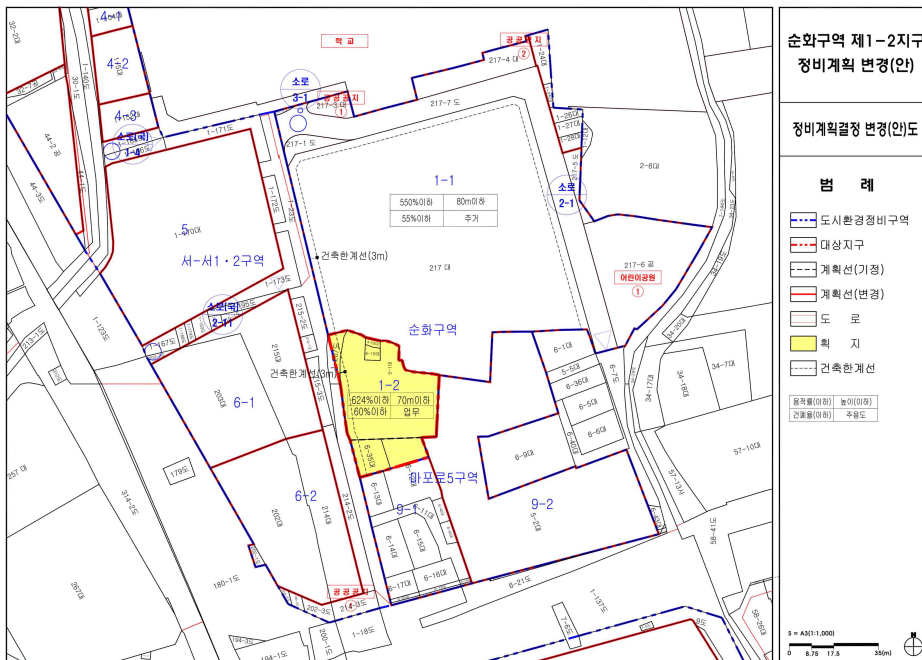
다. 기 타

- 1) 공람기간 : 2019. 7. 31. ~ 2019. 8. 31.(30일간)
- 2)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02-3396-5772)
- 3) 관계서류 : 생략(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

< 정비계획 결정도(기정) >



<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도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74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
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를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100% 면제에서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조문 삭제 및 신설

- 제6조(수수료의 감면)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삭제
: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100% 면제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신설
: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50% 감면

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제1호나목(1)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서’로 명칭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전화: 02-3396-5255, FAX: 02-3396-8718, E-mail: lyh0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붙임1]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③「서울특별시 중구 성실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4종)

(단위: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 고
나.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과세증명서	1건	8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11.「서울특별시 중구 성살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 12.「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납세)증명 ②삭제(1997.1.18.) 〈신설〉 〈신설〉	<u>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u>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11.〈삭제〉 12.〈삭제〉 ②(현행과 같음) ③「서울특별시 중구 성살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대상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세목별과세증명서는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